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이용자정책국에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재난방송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이용자정책총괄과·인터넷이용자정책과·통신시장조사과·이용자보호과”를 “이용자정책총괄과·인터넷이용자정책과·통신시장조사과·이용자보호과·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2.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3. 정보통신망 상에서 청소년 보호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에 따른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
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 및 조사·제재
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 및 조사·제재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보고서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1호 중 “지원에”를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접수 지원”을 “접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과·징수 지원”을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변경허가 지원”을 “변경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등의 지원에”를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청문의 지원”을 “청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부과·징수 지원”을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명령 지원”을 “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부과·징수 지원”을 “부과·징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8명”을 “19명”으로 한다.

제11조의2 앞에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삽입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한시정원”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앞에 “제4장 한시정원”을 삽입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31”을 “234”로 하고, 일반직 계 “224”를 “22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를 “1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8”을 “17”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0” 및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각각 삭제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1”을 “72”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2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6”을 “17”로 하며, “기록연구사 1”을 삭제한다.

별표 1의3 중 총계 “231”을 “234”로 하고, 일반직 계 “223”을 “22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를 “1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8”을 “17”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5”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5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4” 및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각각 삭제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7”을 “68”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8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5”를 “16”으로 하며, “기록연구사 1”을 삭제한다.

별표 1의4 중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을 “8”로 하고, “통신운영주사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3명 (4급 1명, 5급 1명, 7 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 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용자정책국) ① (생 략)	제7조(이용자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정책국에 <u>이용자정책 총괄과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통신시장조사과 · 이용자보호과</u> 및 단말기유통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 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단 말기유통조사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u>이용자정책총 괄과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통 신시장조사과 · 이용자보호과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u>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u>	<삭 제>
8. <u>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 관과의 협력</u>	<삭 제>
9. <u>정보통신망 상에서 청소년 보호</u>	<삭 제>
10. ~ 13. (생 략)	7. ~ 10. (현행 제10호부터 제1 3호까지와 같음)

1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
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
원 및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
베이스의 보급

15. (생략)

16.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
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
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
정·개정

1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
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 및
조사·제재

1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
실태 점검 및 조사·제재

19. ~ 30. (생략)

⑤·⑥ (생략)

<신설>

<삭제>

11. (현행 제15호와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2. ~ 23. (현행 제19호부터 제
30호까지와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2.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

관과의 협력

3. 정보통신망 상에서 청소년
보호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에 따른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
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
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
정·개정

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
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 및
조사·제재

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
실태 점검 및 조사·제재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⑦ (생 략) 제9조의2(직무) 방송통신사무소 (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u>지원</u>에 관한 사항 2.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u>접수</u> <u>지원</u>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3.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u>부과</u> · <u>징수</u> <u>지원</u>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4.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u>변경</u>허가 <u>지원</u>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보조국으로 한정한다)	<u>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보고서에 관한 사항</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9조의2(직무) ----- ----- -----. 1. ----- ----- ----- -- <u>등에</u> ----- 2. ----- ----- <u>접수</u>----- ----- ----- 3. ----- ----- ----- <u>부과</u> · <u>징수</u>----- ----- 4. ----- ----- <u>변경</u>허가----- ----- --
--	--

5.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주소(이하 “연주소”라 한다)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6.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의 지원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7.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원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지원에 관한 사항(영

5. -----

-- 등에 -----

6. -----

----- 청문 -----

7. -----

-- 부과·징수 -----

8. -----

-- 명령 -----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
다)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지원에 관한 사항(영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
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
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
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
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
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신 설>

제4장 한시정원

--

9. -----

----- 부과
· 징수-----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9명-,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삭 제>

<u><신 설></u> <u><신 설></u>	<u>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 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 직은 별표 2와 같다.</u> <u>제4장 한시정원</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31</u>	<u>234</u>	+3
·	·	·	
·	·	·	
일반직 계	<u>224</u>	<u>227</u>	+3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2</u>	<u>13</u>	+1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 관	<u>18</u>	<u>17</u>	-1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 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 관</u>	<u><신설></u>	<u>71</u>	+71
<u>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설></u>	<u>1</u>	+1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u>	<u>70</u>	<u><삭제></u>	-70
<u>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u>	<u>1</u>	<u><삭제></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재안 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71</u>	<u>72</u>	+1
<u>행정주사 또는 기록연구사</u>	<u><신설></u>	<u>1</u>	+1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6</u>	<u>17</u>	+1
·	·	·	
·	·	·	
<u>기록연구사</u>	<u>1</u>	<u><삭제></u>	-1
·	·	·	
·	·	·	

[별표 1의3]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1</u>	<u>234</u>	+3
·	·	·	
·	·	·	
일반직 계	<u>223</u>	<u>226</u>	+3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2</u>	<u>13</u>	+1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 관	<u>18</u>	<u>17</u>	-1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 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 관</u>	<신설>	<u>75</u>	+75
<u>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신설>	<u>1</u>	+1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u>	<u>74</u>	<삭제>	-74
<u>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u>	<u>1</u>	<삭제>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재안 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67</u>	<u>68</u>	+1
<u>행정주사 또는 기록연구사</u>	<신설>	<u>1</u>	+1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 는 방송통신주사보	<u>15</u>	<u>16</u>	+1
·	·	·	

<u>기록연구사</u> • • •	• <u>1</u> • •	• <u><삭제></u> • •	-1
--	--	---	-----------

[별표 1의4]

방송통신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 전단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 • <u>7</u> • •	• • <u>8</u> • •	+1
<u>통신운영주사</u>	<u>1</u>	<u><삭제></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1